

2020년도 제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5. 18.(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74호)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742건(안전번호 제2020-25491호~27650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25491호, 25492호는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방송물을 이용할 수 있는 해외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광고와 함께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25493호~25531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과 제품키, 크랙파일 등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25532호~25592호는 밴드에서 영화를 제공한 사안임. 이 중 안전번호 제2020-25533호~25536호, 제2020-25540호~25547호, 제2020-25553호~25561호, 제2020-25565호~2020-25566호, 제2020-25568호~25573호, 제2020-25575호~25576호, 제2020-25578호, 제2020-25585호~25586호, 제2020-25589호, 제2020-25591호~25592호는 밴드 회원수가 100명 이하인 사안으로 소규모 밴드에 관한 심의 기준 재정립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20-25491호~25532호, 제2020-25537호~25539호, 제2020-25548호~25552호, 제2020-25562호~25564호, 제2020-25567호, 제2020-25574호, 제

2020-25577호, 제2020-25579호~25584호, 제2020-25587호~25588호, 제2020-25590호, 제2020-25593호~27650호는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63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175건(안건번호 제2020-2024호~2198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3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172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71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34개 안건, 동일 게시물에 대한 중복 청구 1건(34개 안건은 부결 사유 중복)}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7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의 저작물명, 채널명, 8쪽의 밴드명, 저작물명, 9쪽의 게시자명, 저작물명, 게시물 내용, 10쪽의 게시물 내용, 채널명, 11쪽의 저작물명, 12쪽의 게시물 내용, 저작물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2호 안건인 정보 제공 청구 심의에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7쪽~20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 내용과 관련 있음.
- B 위원: 동의함. 해당 부분은 비식별해야 할 것임.
- C 위원: 같은 생각임. 제2호 안건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D 위원: 같은 생각임. 제2호 안건 회의록은 비공개 쪽수를 표기하면 될 것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채널명, 밴드명, 게시자명, 게시물 내용은 비식별 처리함.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7쪽~20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25491호~27650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3,742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5491호, 25492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에 해당되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링크설정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될 수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25491호, 2549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D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A 위원: 동의함.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5491호, 2549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5493호~2553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Office',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어도비사의 'Photoshop', 오토데스크사의 'AutoCAD' 등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총 49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5493호~25531호 소프트웨어 복제물들은 2020년, 2019년 등 비교적 최신 저작물이며 자동인증, 크랙파일 또는 시리얼 넘버 등을 제공하고 있음. 어떤 온라인

게시물이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과 해당 프로그램을 크래킹하는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한 경우라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안전번호 제2020-25527호는 인증도 필요 없는 무설치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MS OFFICE'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마이크로소프트',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한글과컴퓨터', 'Lightroom', 'Premiere Pro', 'Master Collection', 'Illustrator', 'Photoshop'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어도비', 'Inventor', 'AutoCAD'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오토데스크', 'SketchUp Pro'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트림블', 'Nero Burning ROM'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네로', 'Cubase'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스테인버그', 'Camtasia Studio'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테크스미스'는 각 홈페이지에서 약 1개월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25493호~2553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 D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안전번호 제2020-25536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확인하면서)현재 해당 밴드의 회원 수는 2명으로 회원이 줄었음.
- 성원영 전문위원: 채증자료상 회원 수가 3명인 것은 보호원 모니터링 요원이 불법복제물을 다운받기 위해 해당 밴드에 가입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B 위원: 해당 밴드의 전체 게시물을 보고자 함.
- 성원영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0-25536호 밴드의 전체 게시물을 보여주면서)해당 밴드에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해당 밴드는 회원 수가 적지만 반복적으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해당 밴드에서 반복적으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것을 보면 불법복제물 공유를 목적으로 밴드를 개설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하지만, 불법복제물을 이렇게 업로드하면서도 회원 수가 적다는 것은 회원 수를 늘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임. 해당 밴드의 현재 회원 수는 2명으로, 게시자와 게시자 가족에 준하는 자를 위해 만든 사적인 성격의 밴드인데, 밴드를 개설할 때 고정값인 '공개형 밴드'를 수정하지 않아서 공개형 밴드가 된 것이 아닐까 싶음.

안전번호 제2020-25562호 밴드의 경우 회원 수가 657명이고, 밴드명이 '■■■■'으로 상업적인 성격이 있어 보이며, 불법복제물의 게시를 통해 회원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음.

하지만 회원 수가 10명 미만인 밴드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임.

- B 위원: 사적인 목적을 위해 개설된 밴드라 하더라도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이 명확함. 이는 법적으로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음. 하지만 보호원이 소규모 밴드의 게시물까지 모니터링하고 시정권고를 해야 하는지는 의문임.

일단 밴드명 자체가 불법복제물 공유를 의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시정권고가 가능할 것임. 밴드명만으로는 사적인 성격의 밴드로 보이더라도 불법복제물이 상당히 많이 공유되고 있어서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음. 하지만 회원 2명 간에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호원이나 심의위원회가 개입하기에 애매한 것 같음.

- C 위원: 시정권고 뿐 아니라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라도 회원 수가 적어도 100명 이하인 밴드에 대해서는 심의 기준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A 위원: 시정권고를 하려면 밴드의 주된 목적과 관련된 게시물 수, 혹은 전체 게시물 수 대비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게시물 수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임.

‘[] [] []’ 밴드는 회원 수는 2명이지만 게시물 거의 다 불법복제물임.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0-25568호에 해당하는 밴드의 현재 상태를 볼 수 있는지?

- C 위원: (안전번호 제2020-25568호 밴드의 전체 게시물을 보면서)해

당 밴드의 게시물들을 보니 해당 밴드는 밴드명과 관련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밴드는 맞는 것으로 보임.

- D 위원: 그런데 전체 게시물 중에서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상당히 많아 보임.
- C 위원: 아무 조건 없이 검색되는 밴드라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함. 다만 밴드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설된 것도 아니고 2명, 20명과 같은 소규모 밴드라면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D 위원: 하지만 그 기준을 100명, 20명으로 정해버리면 그 한도 내에서 불법복제물을 제한 없이 공유하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음.
- B 위원: 해당 사안은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밴드 회원 수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 것 외에도 다른 판단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A 위원: 동의함.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그렇다고 시정권고를 하지 않고 방치할 수는 없는 사안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밴드 운영자 입장에서 밴드 내 저작권 침해 환경을 자정하는 기회도 될 수 있음.
- C 위원: 그렇다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1기 심의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한 바는 있지만 저작권 침해 환경이 다양하게 변하다 보니 새롭게 기준을 정립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25532호~2559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금번 상정 안건 중 밴드 회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재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C 위원: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거나 회원 가입만 하면 게시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점 등은 시정권고 가결 요건에 해당할 것이나, 멤버수가 적어 사적인 성격이 강한 밴드의 경우를 감안하여 밴드 멤버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회의에서 시정권고 기준에 대해 재논의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밴드의 멤버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소규모 밴드이더라도 대규모 밴드로 확장될 가능성, 밴드명으로 추론되는 개설 목적, 가입 요건, 전체 게시물 수 대비 불법복제물 게시물 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전체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모니터링 및 시정권고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멤버수가 100명 이하인 밴드에 대해서까지 시정권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전체위원회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나머지 안건들은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25533호~25536호, 제2020-25540호~25547호, 제2020-25553호~25561호, 제2020-25565호, 제

2020-25566호, 제2020-25568호~25573호, 제2020-25575호, 제2020-25576호, 제2020-25578호, 제2020-25585호, 제2020-25586호, 제2020-25589호, 제2020-25591호, 제2020-25592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20-25491호~25532호, 제2020-25537호~25539호, 제2020-25548호~25552호, 제2020-25562호~25564호, 제2020-25567호, 제2020-25574호, 제2020-25577호, 제2020-25579호~25584호, 제2020-25587호, 제2020-25588호, 제2020-25590호, 제2020-25593호~2765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5593호~27650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음악 '돌덩이 (가수: 하현우 (국카스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5613호의 음원파일은 2020. 2. 7. 발매된 곡으로 앨범 '이태원 클라쓰 OST Part 3'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하현우 (국카스텐)'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해당 곡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은 5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음악 '뽕수로 하겠습니다 (가수: 뽕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5638호의 음원파일은 2020. 4. 21. 발매된 곡으로 앨범 '빌보드 프로젝트 Vol.1'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2020년 04월 21일 신곡'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해당 곡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음원의 실연자 외 3인이 작사를 하였음. 해당 압축 파일은 18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음악 'Moon (가수: 방탄소년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5664호의 음원파일은 2020. 2. 21. 발매된 곡으로 앨범

'MAP OF THE SOUL : 7'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Melon]2020년 05월 09일 오후 06시 기준 TOP 100'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약 35곡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음원의 실연자인 'RM, 진' 외 6인이 작사, 작곡을 하였음. 해당 압축 파일은 9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게임 '시티즈: 스카이라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0-25770호는 2019. 11. 7. 출시된 '시티즈: 스카이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팩: 모던 시티 센터'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7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게임물의 정품 판매가는 약 5,500원이고, 배급사는 '패러독스 인터랙티브'임.

(만화 '월드 트리거 (출판 : 학산문화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5808호는 웹하드에서 만화 '월드 트리거 1~187화, 신년 4컷 포함' 압축 파일을 52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어문저작물의 1권은 2016. 12. 2. 출간되었고, 총 20권으로 미완결임. 합법저작물 단권 판매가는 약 2,700원임. 해당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번역본을 jpg 파일로 이용할 수 있음.

(만화 '액터주 (출판 : 서울문화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5898호는 웹하드에서 만화 '(번역 만화) [액터주 1-62화]' 압축 파일을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어문저작물의 1권은 2019. 10. 17. 출간되었고, 총 8권으로 미완결임. 합법저작물 단권 판매가는 약 3,000원임. 해당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번역본을 jpg 파일로 이용할 수 있음.

(방송 '네코파라'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6258호는 블로그에서 '네코파라 4화' 약 24분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에는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방송물은 일본 AT-X 채널에서 2020. 1. 9.부터 2020. 3. 26.까지 방영한 총 12부작 일본 TV만화임. 참고로 '네코파라 4화'는 2020. 1. 30. 방영하였음.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26364호는 웹하드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9화'를 4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물은 tvN 채널에서 2020. 3. 12.부터 목요일 오후 9시에 방영 중인 총 12부작 드라마임.

(방송 '킹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6444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킹덤 시즌1'을 1,38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물은 넷플릭스에서 2019. 1. 25.에 공개된 총 6부작 드라마임. 해당 드라마의 원작은 만화임.

(영화 '인비저블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7157호는 2020. 2. 26.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93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5. 14.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20.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영화 '엠마'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7187호는 2020. 2. 27.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36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네이버 시리즈on'에서 4,500원에 대여, 9,900원에 구매 가능함. 해당 영상물에는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영화 '사냥의 시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7190호는 넷플릭스에서 2020. 4. 23. 공개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8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영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27191호는 국내에서 2020. 3. 5.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내 개봉이 연기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8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미국에서 2020. 3. 6. 개봉하였음.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25593호~2765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 A 위원: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D 위원: 동의함.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이 중단된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5593호~27650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5533호~25536호, 제2020-25540호~25547호, 제2020-25553호~25561호, 제2020-25565호, 제2020-25566호, 제2020-25568호~25573호, 제2020-25575호, 제2020-25576호, 제2020-25578호, 제2020-25585호, 제2020-25586호, 제2020-25589호, 제2020-25591호, 제2020-25592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20-25491호~25532호, 제2020-25537호~25539호, 제2020-25548호~25552호, 제2020-25562호~25564호, 제2020-25567호, 제2020-25574호, 제2020-25577호, 제2020-25579호~25584호, 제2020-25587호, 제2020-25588호, 제2020-25590호, 제2020-25593호~2765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9면부터 36면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024호~2198호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3개의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기로 의결하되, 나머지 172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171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34개 안전, 동일 게시물에 대해 중복 청구한 1개 안전(34개 안전은 부결 사유가 중복)}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5. 25.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